



##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

최 원 선임연구원

- 금융당국은 7월 21일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산업 내 바람직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'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'을 마련하여 발표함.
  -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로 위험자산 위주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지양하고, 자기자본에 맞는 적정 자산을 유지하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.
  - 또한, 여신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신심사 및 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동시에 대출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함.
  
-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확대와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합리화를 추진함.
  - 현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에 대하여 과도한 인가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~3개의 여신전문출장소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인가기준을 완화함.
  -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현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0%에서 40%로 완화함.
  - 또한, 지방저축은행 영업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본사 주소지 이외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함.
  
- 여신심사능력 제고와 영업기반 확충을 위하여 여신심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,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를 합리화하며,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함.
  -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, 경영실태평가항목 중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 여신심사체계의 적정성 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함.

- PF대출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및 비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함.
  - 현재는 부동산 PF, 건설업, 부동산업·임대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50%로 제한됨.
- 재무건전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할부 금융업을 허용함.
  - 일정 요건이란 BIS비율 10% 이상, 고정이하 여신비율 8% 이하, 최근 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을 의미함.

(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, 금감원, 7/21)